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관련한 정책 동향 : 특허권 및 저작권을 중심으로

고상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경제사회연구본부 연구원

1. 머리말

Generative AI는 이제 일상생활에 스며들어 인간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꾸고 있다. 데이터를 학습하여 창의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Generative AI는 현재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초석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Generative AI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활용되면서 인공지능에 의한 소유권, 저작권, 초상권 등 다양한 권리 침해에 대한 법적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EU는 Generative AI를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분류하고 위험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쟁점 중 창작물의 특허권 및 저작권에 대한 해외의 최근 판례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Generative AI와 관련한 특허법상 발명자 적격, 저작권법상 저작권자 적격,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 중심으로 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인공지능의 창작물 특허권 및 저작권 관련해외 정책 동향

2.1 특허법상 인공지능의 발명자 출원 적격 여부

• 사건 배경

2019년 인공지능 개발자 Stephen Thaler가 DABUS(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라는 이름의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하여 17개국에 국제 특허출원을 진행하였다. DABUS가 생성한 2가지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통해 각국에서 인공지능이 발명자 출원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났다.

2.1.1 미국(Thaler v. Hirshfeld, USPTO, 2022)

• 사건 개요

2019년 Stephen Thaler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 United State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특허를 출원, DABUS에 의한 2가지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 및 특허 보호를 요구하였다. 미국 특허청은 특허출원에 발명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Thaler에게 유효한 발명자를 특정하도록 보정명령을 하였지만, Thaler는 보정명령 취소를 청원하였다. 이에 미국 특허청은 2020년 4월 22일 DABUS 출원에 대하여 기계는 발명자로서의 자격 요건이 안되며, 특허출원 발명자는 자연인이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청원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Thaler가 미국 버지니아 동부연방지방법원에 미국 특허청 출원 기각 결정에 대해 사법심사를 요청한 사건이다.

- 1심 판결내용

2019년 9월 2일 버지니아 동부연방지방법원 1심 판결은 특허법에 따라 '발명자'는 '개인'이어야 하며, 개인이란 용어의 통상적인 의미는 자연인이라고 결론 내리면서 미국 특허청의 결정에 동의하였다. 이에 Thaler는 'DABUS는 특정 데이터로 훈련된 바 없이 새롭고 현저한 것임을 스스로 식별한 것'이며,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진보를 촉진하기 위해 특허법의 더 넓은 맥락과 목적으로 해석될 때 비인간적 실체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2021년 9월 24일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CAFC,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 항소하였다.

- 2심 판결내용

2022년 8월 5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AI 시스템인 DABUS가 미국 특허법상 발명자가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면서, 특허법 조문의 문구 해석으로 발명자는 개인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 개인이라는 용어는 자연인을 지칭한다고 판시하였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특허법에서 '개인'에 대해 정의하고 있지 않지만, 대법원은 의회가 다른 의미를 의도했다는 아무런 징후가 없는 한 '개인'이라는 용어는 인간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설명하면서, 법인도 국가도 발명자가 될 수 없고 자연인만이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연방순회항소법원의 종래 판결과도 일치한다고 판시하였다.

2.1.2 EU(Thaler v. Boards of Appeal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 2022)

- 사건 개요

2020년 1월 27일 유럽연합 특허청(EPO)은 발명자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어야 한다는 유럽특허 조약(EPC)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원을 거절하였다. 유럽연합 특허청은 AI는 법적 인격이 부여되지 않아 발명자로서의 권리를 향유할 수 없다는 점, AI는 고용이 아닌 보유되는 것이라는 점, AI는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으므로 특허권을 양도할 수 없고, AI 보유자는 권리 승계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출원을 거절하였다. 유럽연합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Thaler는 EPO 항소위원회(EPO Boards of Appeal of the European Patent Office)에 유럽연합 특허청 출원 거절결정에 대해 심판을 청구하였다.

- 2심 판결내용

2021년 12월 EPO 항소위원회는 발명자는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기계를 발명자로서 하여 특정하는 것은 EPC 제81조 및 발명자의 지정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실시함으로서 출원에 발명자의 기재가 없는 것은 출원 무효라 결정하며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 독일 법원

독일 특허청은 발명자는 자연인에 한정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렸고, 독일 연방 특허법원 또한 발명자는 자연인에 한정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독일 연방 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성명을 기재할 때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병기하는 '현재의 법적 장애에서 벗어

날수 있는' 옵션도 허용된다고 판시하였다.

2.1.3 호주(Commissioner of Patents v Thaler, 2022)

• 사건 개요

호주 특허청은 특허권은 사람에게만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인 DABUS는 인간이 아닌 발명자는 특허권자가 될 수 없다며 DABUS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내렸다.

• 1심 판결내용

2021년 7월 30일 호주연방법원 제1심에서 인공지능은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법원은 호주 특허법에 발명자의 정의가 없으며, 인공지능 시스템이 발명가가 될 수 없다는 명제를 명시적으로 반박하는 조항이 특허법에 없다는 이유로 인공지능이 발명자이거나 권리를 얻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인공지능을 보유하는 출원인에 대한 권리 귀속을 인정하며, 인공지능의 보유에 기초하여 특허를 받을 권리는 보유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해석했다. 이로써 1심 호주연방법원은 출원 거절 결정을 무효로 하고, 출원을 특허청으로 환송 판결하였다. 이에 호주 특허청은 호주연방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호주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하였다.

• 2심 판결내용

2022년 4월 13일 호주 연방항소법원은 특허법상 특허권이 직·간접적으로 파생하는 실질적인 발명자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며, 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인격을 가진 자연인인 사람만이 특허의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2.2 저작권법상 인공지능의 창작물의 저작권 등록 적격 여부

2.2.1 미국(Thaler v. USCO, 2022)

• 사건 개요

2018년 11월 인공지능 개발자인 Stephen Thaler가 미국 저작권청(USCO, The U.S. Copyright Office)에 AI가 제작한 '파라다이스로 가는 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라는 제목의 창작물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였다. 2019년 미국 저작권청은 저작권은 인간에 의해 창작된 창작물이어야 한다면 저작권등록을 거절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2019년, 2020년 등록 거절에 대한 두 번의 재심사를 진행하면서 '인간에 의한 창작물' 요건은 위헌이며, 저작권 보호라는 목표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기계에 의해 창작된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을 승인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 결정 내용

2022년 2월 14일 미국 저작권청은 연방 대법원을 비롯한 저작권법을 해석하는 법원은 저작권 보호 대상을 '인간에 의한 창작물'로 제한해왔다고 설명하면서, 미국 저작권청 실무지침에서 인공지능을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지만, 인간에 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생산된 것에는 저작권이 없다고 결정하였다.

2.3.2 미국(Kashtanova v. USCO, 2023)

- 사건 개요

2022년 9월 15일 신청인 Kashtanova가 미드저니(Midjourney)를 활용하여 18페이지로 구성된 만화책 '새벽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여 승인받았지만, 2023년 2월 22일 미국 저작권청(USCO)은 AI에 의해 생성된 이미지는 작가의 산물이 아니므로 저작권 등록 취소 처분을 진행하였다.

- 결정 내용

2023년 2월 22일 미국 저작권청은 Kashtanova가 '새벽의 자리야'의 생성된 이미지를 실제로 형성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산출물을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고 AI 이미지 생성기가 만든 이미지를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의 원본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3.2 미국 저작권청 지침(Copyright Registration Guidance: Works Containing Material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2023)

- 주요 내용

2023년 3월 16일 미국 저작권청은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된 자료를 포함하는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지침'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생성된 저작물도 기존 저작물과 동등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지만, 인간의 창의성이 저작물에 드러나야 하며, 저작권 등록 신청 시 인공지능 사용 여부 및 인공지능 사용 결과에 대한 인간의 기여도를 명시하도록 지침을 발표하였다.

2.3 인공지능이 제작한 저작물의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

2.3.1 미국(GETTY IMAGES v STABILITY AI, 2023)

- 사건 개요

2022년 8월 Stability AI가 Stable Diffusion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하고 모델을 이용하여 Dream studio라는 플랫폼에서 유료 그림 생성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2023년 1월 GETTY IMAGES(이하 게티이미지)는 Stability AI를 상대로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23년 2월에는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 주장

원고 게티이미지는 Stable Diffusion 모델이 독일의 데이터 세트 LAION의 50억 개에 이르는 학습 데이터로 학습되었고, 이 학습 데이터에 게티이미지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게티이미지의 1,200만 개의 자료가 쓰였다고 주장하였다. 게티이미지의 고품질 이미지는 이미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Stable Diffusion 모델 딥러닝에 유용한 데이터로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Stable Diffusion 모델로 생성된 저작물에는 게티이미지와 유사한 그림이나 게티이미지의 상표, 워터마크가 보이는 그림이 발견된다고 밝혔다. Stable Diffusion 모델은 오픈소스로 제공되면서 Stability AI를 사용하는 제3자가 모델을 사용 및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Stable Diffusion 모델에 기반하여 유료 그림 생성 서비스인 Dream Studio를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및 Stable Diffusion 모델의 영구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 주장

2023년 5월 2일 Stability AI는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과 함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Stability UK는 영국법에 따라 조직되었고 주요 사업장이 영국에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델라웨어주에서는 Stability AI와 관련된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으며, 피해 사실이 델라웨어주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2.3.2 미국(SARAH ANDERSEN, KELLY MCKERNAN, KARLA ORTIZ v STABILITY AI, MIDJOURNEY, DEVIANTART, 2023)

- 사건 개요

2023년 1월 만화, 일러스트레이터인 사라 안데르센 등 개인 저작권자들도 “자신의 미술 저작물이 저작권 동의 없이 Stable Diffusion 모델의 학습 데이터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Stability AI, Midjourney, DeviantArt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 주장

Stability AI가 저작권자들의 작품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였으며, Stability AI는 Stable Diffusion 모델 학습을 설계하여 Dream studio라는 플랫폼에서 유료 그림 생성 서비스를 통해 상업적 이익을 취하고 있으므로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였다. 미술 저작물은 저작권자만의 특유한 화풍이 존재하는데, Stable Diffusion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피고들의 그림 생성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특정 작가의 이름을 자신이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설명하는 표현에 같이 입력하면 특정 화풍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림 창작물로 생성된다. 이에 해당 화풍은 저작권자의 이름과 함께 인격 표지로 대표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저작권자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피고 주장

2023년 4월 18일 Stability AI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미지 및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미지를 식별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Stability AI는 원고인 Kelly Mckernan과 Karla Ortiz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등록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Midjourney는 훈련 데이터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원고의 단일 저작물을 식별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며, DeviantArt 측은 사진 제작과 관련해서 인공지능의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송 기각을 주장하였다.

3. 디지털 시대의 공정이용 원칙

Generative AI는 데이터 마이닝, 웹스크래핑 등을 통하여 얻은 대량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을 학습시켜 제작물을 제작하는데, Generative AI가 저작권자의 사용·허가 없이 저작물을 인공

지능의 학습 데이터로 이용할 수 있는지 각국 정책 분야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인공지능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로 공정이용 원칙의 적용 또는 TDM (Text and Data Mining) 면책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각국 정책 당국의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 EU 저작권지침

2019년 3월 EU는 '유럽연합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권지침(EU Directive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을 개정하면서 제4조에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 등의 복제와 추출에 대한 저작권 제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저작권 제한을 과학연구목적에 한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권리를 유보한 경우를 제외하도록 규정하면서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을 허용하고 있다.

- 미국 저작권법

미국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등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별도 입법은 없지만, 다수의 판례를 통하여 데이터 활용을 공정이용으로 판단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법은 저작권 제한에 대해 공정이용 판단 기준을 제107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데이터 활용에 관련한 저작권의 공정이용 판단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고 판례법으로 구축하여 네 가지 판단 요소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미국은 Authors Guild, Inc. v. Google Inc. 판결에서 구글이 도서를 디지털화하여 자사 서버에 저장한 후 검색을 이용하여 구글 북스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변형적 이용으로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Fox News Network, LLC v. TV Eyes, Inc. 사건과 관련, TV Eyes가 방송을 녹화하여 데이터화하여 검색을 통해 비디오 클립을 감상할 수 있게 한 서비스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은 검색기능과 시청 기능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4. 맺음말

Generative AI의 기술 혁신이 다방면으로 발전하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이용자가 증가한 덕분에 투자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특허권자 또는 저작권자가 될 수 있는지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인공지능은 자연인이 아니므로 특허권자 또는 저작권자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있다.

최근 온라인에서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공개 자료를 자료의 권리자 동의 없이 Generative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고, 연구 외 목적으로 상업적 데이터로 사용되는 것이 적법한 행위인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법적 쟁점이 대두되고 있다. 미국 법원의 저작권 공정이용 법리 외에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판례에서도 언급되었던 데이터 수집으로 인한 권리 침해에 관련한 부정경쟁 법리와 퍼블리시티권 보호 법리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소송 이후 미국법원이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세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하여 법률로 강력하게 규제를 선제적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국내의 정책적, 사회적 상황을 반영한 인공지능 창작물 관련 윤리 가이드라인 제시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참고문헌]

- [1]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Copyright Registration Guidance: Works Containing Material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2023. 3. 16.
- [2]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Zarya of the Dawn (Registration # VAu001480196), 2023. 2. 21.
- [3] GETTY IMAGES, GETTY IMAGES (US), INC. v STABILITY AI, INC., DEMAND FOR JURY TRIAL, 2023. 02. 03.
- [4] SARAH ANDERSEN, KELLY MCKERNAN, KARLA ORTIZ v STABILITY AI INC., MIDJOURNEY INC., DEVIANTART, INC., (Case 3:23-cv-00201), 2023. 1. 13.
- [5] Leonie M. Brinkema, STEPHEN THALER, v USPTO, Case: 21-2347, 2022. 8. 5.
- [6] Second Request for Reconsideration for Refusal to Register A Recent Entrance to Paradise, Copyright Review Board, 2022. 2. 14.
- [7] Alexandria Division, STEPHEN THALER v ANDREW HIRSHFELD, Civil Action No. 1:20cv903, 21. 02. 24.
- [8] 이해영, 미국저작권청(USCO), 인공지능이 만든 등록 거절, 「해외 저작권 보호 동향」, 한국저작권보호원, 2022. 7. 14.
- [9] 김지민,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관련 주요 쟁점,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22. 12. 30.
- [10] 송선미,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해외 동향, 「copyright issue report」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3. 16.
- [11] 차상욱, 인공지능(AI) 관련 특허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 「법학논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제80집, 2023. 1. 25.
- [12] 이광욱, 이근우, 권은구, 그림 생성 초거대 AI 모델에 대한 법적 이슈, 「법무리포트」, 법무법인 화우, 2023. 3. 2.
- [13] 조선일보, "AI의 저작권 침해 더 못참아...인간, 마침내 칼 빼들다.", 2023. 1. 26.
- [14] 특허뉴스,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인공지능(AI)은 특허 발명자가 될 수 없다.", 2022. 8. 16.

※ 출처: TTA 저널 제208호